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단1370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고요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효선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4. 2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1. 10. 21. 접수 제1202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6. 7. 19.자 2016차전9146호)에 기재 '9,206,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9. 1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D은 2021. 4. 28. 사망하였다(이하 D을 가리켜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자녀 C, 피고, F, G가 있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C와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기하여 2021.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팔달구청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の結果로 인하여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모친의 뜻과 기여분이 있는 F의 양보, 피고의 기여분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모친에 대한 피고의 부양 약속 등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는 기여분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서에는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구체적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공동 상속인들간 피고의 기여분을 100%로 하는 협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로서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모친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위 분할협이에 동의하였다는 점, 및 C가 피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왕래가 뜸하였다는 등의 사정과 증인 F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부 동 산 의 표 시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대 192㎡

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66.12㎡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관할)

